

## 【조 례】

|                                                     |    |
|-----------------------------------------------------|----|
| ○ 정선군 조례 제2300호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 1  |
| ○ 정선군 조례 제2301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 ○ 정선군 조례 제2302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 ○ 정선군 조례 제2303호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 ○ 정선군 조례 제2304호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 28 |
| ○ 정선군 조례 제2305호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조례.....       | 34 |
| ○ 정선군 조례 제2306호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
| ○ 정선군 조례 제2307호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
| ○ 정선군 조례 제2308호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 48 |
| ○ 정선군 조례 제2309호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 61 |

## 【고 시】

|                                               |    |
|-----------------------------------------------|----|
| ○ 정선군고시 제2012-68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고시..... | 75 |
|-----------------------------------------------|----|

## 【공 고】

|                                                               |     |
|---------------------------------------------------------------|-----|
| ○ 정선군공고 제2012-534호 정선 신동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 부지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 96  |
| ○ 정선군공고 제2012-543호 2012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지원계획 공고.....            | 99  |
| ○ 정선군공고 제2012-573호 대부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사송달 공고.....         | 99  |
| ○ 정선군공고 제2012-579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재공표.....             | 102 |
| ○ 정선군공고 제2012-593호 2012.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 104 |
| ○ 정선군의의회 공고 제2012-11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5 |

#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2. 8. 1.

정선군 조례 제2300호

###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호국보훈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국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규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전상군경(戰傷軍警)
  - 나. 공상군경(公傷軍警)
  - 다.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 라.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2. “미망인”이란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미망인에게는 나이제한 기준을 두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3.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호국보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호국보훈대상자에게 수당으로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미망인에 승계한다.
2. 호국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군수는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지급)** ①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나이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호국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망위로금의 지급은 호국보훈대상자의 경우에 적용하며, 미망인의 사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의 중단)** ① 수당은 호국보훈대상자나 그 미망인의 사망, 타 시·군·자치구로의 전출, 제3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 신고 이후 다시 군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읍·면장은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지급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호국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관내 주소(주민등록)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해당 읍·면장에

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 <b>보훈등록번호</b>                                                                                                                                                                                                                                                                                                                              |              |  |                                   |  |  |  |  |  |  |                    |  |  |  |             |  |  |  |  |
|--------------------------------------------------------------------------------------------------------------------------------------------------------------------------------------------------------------------------------------------------------------------------------------------------------------------------------------------|--------------|--|-----------------------------------|--|--|--|--|--|--|--------------------|--|--|--|-------------|--|--|--|--|
| <b>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신청서</b>                                                                                                                                                                                                                                                                                                                  |              |  |                                   |  |  |  |  |  |  |                    |  |  |  | <b>처리기간</b> |  |  |  |  |
|                                                                                                                                                                                                                                                                                                                                            |              |  |                                   |  |  |  |  |  |  |                    |  |  |  | 20일         |  |  |  |  |
| <b>신<br/>청<br/>인</b>                                                                                                                                                                                                                                                                                                                       | <b>성 명</b>   |  |                                   |  |  |  |  |  |  | <b>생년월일</b>        |  |  |  |             |  |  |  |  |
|                                                                                                                                                                                                                                                                                                                                            | <b>주 소</b>   |  | 우편번호 : □□□ - □□□<br><br>(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b>예금<br/>계좌</b>                                                                                                                                                                                                                                                                                                                           | <b>금융기관명</b> |  |                                   |  |  |  |  |  |  | <b>예금종류</b>        |  |  |  |             |  |  |  |  |
|                                                                                                                                                                                                                                                                                                                                            | <b>계좌번호</b>  |  |                                   |  |  |  |  |  |  | <b>예금주<br/>성 명</b> |  |  |  |             |  |  |  |  |
|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며,<br>보훈수당 지급을 위하여 정선군의 관계기관(강릉보훈지청 등)에 대한 개인정보조회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div><br><br><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div>신청인</div><div>(서명 또는 인)</div></div><br><br>정선군수 귀하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또는 보훈청의 확인서류) 1부<br>2. 미망인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br>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  |                                   |  |  |  |  |  |  |                    |  |  |  | <b>수수료</b>  |  |  |  |  |
|                                                                                                                                                                                                                                                                                                                                            |              |  |                                   |  |  |  |  |  |  |                    |  |  |  | 없 음         |  |  |  |  |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        |  |  |   |  |  |   |  |  |  |  |  |  |
|--------|--|--|---|--|--|---|--|--|--|--|--|--|
| 보훈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처리기간 |
|                     | 10일  |

|            |                |          |                |  |
|------------|----------------|----------|----------------|--|
| 참 전<br>유공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 사망일자           |          |                |  |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참전유공자<br>와의 관계 |          | 지급기관<br>(예금계좌) |  |

「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제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호국보훈대상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신청인의 통장사본

## 제 정 이 유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예우는 받고 있으나, 보훈급여(수당)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지원대상자 (제2조 및 제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수당)를 받지 못하는 자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내용(제4조)
  - 호국보훈대상자와 그 미망인에게 보훈수당 매월 5만원 지급
  -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 지원방법(제5조 및 제6조)
  - 수당지원 방법 : 신청주의,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의 지급 : 호국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미망인의 사망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 정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2. 8. 1.

정선군 조례 제2301호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녹색환경과”를 “생태환경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추진”, “건설생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각각 삭제하고, “그밖의 관광, 문화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을 “그 밖의 관광,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한시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동계올림픽 추진단을 둔다.

-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 및 대회 지원
-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대회시설 사업 지원
-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획 및 관리방안
-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추진
- 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
- 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
- 그 밖의 동계올림픽·체육에 관한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녹색환경과”를 “생태환경과”로 한다.

②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장” 을 “생태환경과장” 으로 한다.

③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녹색환경과장” 을 “생태환경과장” 으로 한다.

④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녹색환경과장” 을 “생태환경과장” 으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u>녹색환경과</u> ,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관광문화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 제3조(실·과의 설치) ① -----<br>-----<br>-----<br>----- <u>생태환경과</u> ,-----<br>-----<br>-----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5. (생 략)                                                                                                                           | 1.~5. (현행과 같음)                                                                                                                        |
| <u>6. 녹색환경과</u>                                                                                                                       | <u>6. 생태환경과</u>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8. 관광문화과                                                                                                                              | 8. 관광문화과                                                                                                                              |
| ○ 관광·문화예술·체육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 -----<br>-----                                                                                                                      |
| ○ 관광지 개발 및 운영 관리                                                                                                                      | ○ -----                                                                                                                               |
| ○ 관광사업 인·허가 처리                                                                                                                        | ○ -----                                                                                                                               |
| ○ 향토문화 발굴 및 계승보전                                                                                                                      | ○ -----                                                                                                                               |
| ○ 문화재 보호관리                                                                                                                            | ○ -----                                                                                                                               |
| ○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 ○ -----                                                                                                                               |
| <u>○ 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u>                                                                                                             | <u>&lt;삭 제&gt;</u>                                                                                                                    |
| <u>○ 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u>                                                                                                                | <u>&lt;삭 제&gt;</u>                                                                                                                    |
| <u>○ 건전생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 <u>&lt;삭 제&gt;</u>                                                                                                                    |
| <u>○ 그밖의 관광, 문화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u>                                                                                                      | <u>○ 그 밖의 관광,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u>                                                                                                         |
| <u>&lt;신 설&gt;</u>                                                                                                                    | 제3조의3(한시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동계올림픽 추진단을 둔다.<br>○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 및 대회 지원<br>○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대회시설 사업 지원<br>○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획 및 관리방안 |

| 현행 | 개정안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추진</u></li> <li>○ <u>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u></li> <li>○ <u>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u></li> <li>○ <u>그 밖의 동계올림픽·체육에 관한 사항</u></li> </ul> |

**개 정 이 유**

-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부서별 업무 기능에 보다 부합하도록 행정기구 명칭 변경(제3조)
  - － “녹색환경과”를 “생태환경과”로 명칭 변경
- 부서별 사무조정(제3조제2항)
  - － 관광문화과 사무 중 “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추진”, “건강생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에 이관
- 2018 동계올림픽 준비 및 지원, 동계스포츠 등 체육진흥을 위해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 신설(제3조의3)

정선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2. 8. 1.

정선군 조례 제2302호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표 2]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 1. 일반직공무원

|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비 율 | 1% 이내 | 6% 이내 | 27% 이내 | 33% 이내 | <u>25% 이내</u> | <u>8% 이상</u>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2. 기능직공무원

| 구 분 | 6급    | 7급              | 8급              | 9급              |
|-----|-------|-----------------|-----------------|-----------------|
| 비 율 | 5% 이내 | <u>20.5% 이내</u> | <u>15.0% 이내</u> | <u>59.5% 이상</u>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구 분 | 연구직   |        | 지도직    |               |
|-----|-------|--------|--------|---------------|
|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 비 율 | 3% 이내 | 97% 이상 | 10% 이내 | <u>90% 이상</u>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4. 별정직공무원

| 구 분 | 5급상당 이상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
| 비 율 | 0% 이내   | 50% 이내 | 50% 이내 | 0% 이내 | 0% 이상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3]

##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 구 분        | 총 계                 | 의 회 | 본 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
| 총 계        | 568                 | -   |                    |      |     |     |
| 정무직 계      | 1                   | -   |                    |      |     |     |
| 일반직 계      | <a href="#">453</a> | -   |                    |      |     |     |
| 3급         | -                   |     |                    |      |     |     |
| 4급         | 3                   |     | 3                  |      |     |     |
| 5급         | <a href="#">25</a>  | 2   | <a href="#">11</a> | 2    | 1   | 9   |
| 6급이하 계     | <a href="#">425</a> | -   |                    |      |     |     |
| 별정직 계      | 2                   | -   |                    |      |     |     |
| 5급 상당      | 0                   | -   |                    |      |     |     |
| 6급 상당 이하 계 | 2                   | -   |                    |      |     |     |
| 연구직 계      | 4                   | -   |                    |      |     |     |
| 연구관        | 0                   | -   |                    |      |     |     |
| 연구사        | 4                   | -   |                    |      |     |     |
| 지도직 계      | <a href="#">20</a>  | -   |                    |      |     |     |
| 지도관        | 2                   |     |                    | 2    |     |     |
| 지도사        | <a href="#">18</a>  | -   |                    |      |     |     |
| 기능직 계      | <a href="#">88</a>  | -   |                    |      |     |     |

## 개정 전·후 대비표(별표)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 1. 일반직공무원

|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비 율 | 1% 이내 | 6% 이내 | 27.0% 이내 | 33% 이내 | <u>25%(24%) 이내</u> | <u>8.0%(9.0%) 이상</u>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안은 개정 전

## 2. 기능직공무원

| 구 분 | 6급    | 7급                    | 8급                 | 9급                      |
|-----|-------|-----------------------|--------------------|-------------------------|
| 비 율 | 5% 이내 | <u>20.5%(16.5%)이내</u> | <u>15%(14%) 이내</u> | <u>59.5%이상(64.5%이내)</u>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구 분 | 연구직   |        | 지도직    |                   |
|-----|-------|--------|--------|-------------------|
|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 비 율 | 3% 이내 | 97% 이상 | 10% 이내 | 90% <u>이상(이내)</u>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 4. 별정직공무원

| 구 분 | 5급 상당 이상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 9급 상당 |
|-----|----------|--------|--------|-------|-------|
| 비 율 | 0% 이내    | 50% 이내 | 50% 이내 | 0%이내  | 0%이상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 구 분        | 총 계                      | 의 회 | 본 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
| 총 계        | 568                      | —   |                        |      |     |     |
| 정무직 계      | 1                        | —   |                        |      |     |     |
| 일반직 계      | <a href="#">453(451)</a> | —   |                        |      |     |     |
| 3급         | —                        |     |                        |      |     |     |
| 4급         | 3                        |     | 3                      |      |     |     |
| 5급         | <a href="#">25(24)</a>   | 2   | <a href="#">11(10)</a> | 2    | 1   | 9   |
| 6급이하 계     | <a href="#">425(424)</a> | —   |                        |      |     |     |
| 별정직 계      | 2                        | —   |                        |      |     |     |
| 5급 상당      | 0                        | —   |                        |      |     |     |
| 6급 상당 이하 계 | 2                        | —   |                        |      |     |     |
| 연구직 계      | 4                        | —   |                        |      |     |     |
| 연구관        | 0                        | —   |                        |      |     |     |
| 연구사        | 4                        | —   |                        |      |     |     |
| 지도직 계      | <a href="#">20(17)</a>   | —   |                        |      |     |     |
| 지도관        | 2                        |     |                        | 2    |     |     |
| 지도사        | <a href="#">18(15)</a>   | —   |                        |      |     |     |
| 기능직 계      | <a href="#">88(93)</a>   | —   |                        |      |     |     |

## 개 정 이 유

- 2018 동계올림픽 한시기구 설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기구 및 인력조정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정원의 총수 : 568명
  - 집행기관 : 557명(현행과 같음)
  - 의 회 : 11명(현행과 같음)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별표 2)
  - 일반직 : 8급 25.0%(증 1.0%), 9급 8.0%(△1.0%)
  - 기능직 : 7급 20.5%(증 4%), 8급 15.0%(증 1.0%), 9급 59.5%(△5.0%)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별표 3)
  - 일반직 : 행정·시설 5급 증1명, 행정8급 증5명, 행정·환경8급 증1명, 행정·사회복지 8급 증1명, 행정8급 △1명, 환경8급 △1명, 시설9급 △1명, 행정6급·농촌지도사△1명, 농업6급·농촌지도사 △2 명
  - 기능직 : 기능7급 증3명, 기능9급 △8명
  - 연구·지도직 : 농촌지도사 증3명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2. 8. 1.

### 정선군 조례 제2303호

####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제12조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

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

##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상당계급       | 임 용 자 격                                                                                                                                                                                                                                                                                                                                            |
|------------|----------------------------------------------------------------------------------------------------------------------------------------------------------------------------------------------------------------------------------------------------------------------------------------------------------------------------------------------------|
| 3급상당<br>이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li> </ol> |
| 4급상당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li> </ol>     |
| 5급상당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li> <li>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li> </ol>                        |
| 6급상당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li> <li>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li> <li>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li> <li>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li> </ol>              |

| 상당계급 | 임 용 자 격                                                                                                                                                                                                  |
|------|----------------------------------------------------------------------------------------------------------------------------------------------------------------------------------------------------------|
| 7급상당 |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br>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br>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br>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br>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br>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 8급상당 |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br>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br>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br>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br>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 9급상당 |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br>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br>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 ※ 비 고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임용자격) ① (생략)</p> <p>② <u>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u></p> <p>③ <u>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u></p> <p>제5조(임용절차 등) ①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 <p>제4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u>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u></p> <p>제5조(임용절차 등) ①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u></p> <p>③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u></p> |



| 현<br>행 | 개<br>정<br>안                                                                                                                                                                                                                                                                                                                                                                                                                                                                                                                                                                                                                                                                       |
|--------|-----------------------------------------------------------------------------------------------------------------------------------------------------------------------------------------------------------------------------------------------------------------------------------------------------------------------------------------------------------------------------------------------------------------------------------------------------------------------------------------------------------------------------------------------------------------------------------------------------------------------------------------------------------------------------------|
|        | <p>1. <u>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u></p> <p>2. <u>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3. <u>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4. <u>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u></p> <p>④ <u>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u></p> <p><u>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u></p> |
| <신 설>  |                                                                                                                                                                                                                                                                                                                                                                                                                                                                                                                                                                                                                                                                                   |

| 현 행                                                                                                                                                                                                                                                                                                                                                                                                                                         | 개 정 안                                                                                                                                                                                                                                                                                                                                                                                                                                                                                                                    |
|---------------------------------------------------------------------------------------------------------------------------------------------------------------------------------------------------------------------------------------------------------------------------------------------------------------------------------------------------------------------------------------------------------------------------------------------|--------------------------------------------------------------------------------------------------------------------------------------------------------------------------------------------------------------------------------------------------------------------------------------------------------------------------------------------------------------------------------------------------------------------------------------------------------------------------------------------------------------------------|
| <p><u>&lt;신 설&gt;</u></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문제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3. (생략)</p> <p>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p> <p>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p> <p>② (생략)</p> | <p>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p> <p>제10조(직권면직) -----<br/>-----각 호의 어느 하나에 -----<br/>-----.</p> <p><u>&lt;삭 제&gt;</u></p> <p>2.~3. (현행과 같음)</p> <p>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p> | <p>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br/>-----<br/>-----<br/>----- 반영하여<br/>야 한다.</p>                                                                                                                                                                                                             |
| <p>&lt; 신 설 &gt;</p>                                                                                                      | <p>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p> <p>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p> |

**개 정 이 유**

-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제4조제3항)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제5조제1항)
-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 및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제5조제3항)
-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준용근거 마련(제5조제4항)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제5조의2)
-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제8조의2)
-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제10조)
-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제11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제12조)
-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제12조의 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8. 1.

정선군 조례 제2304호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1의 구분란 중 “기능직·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한다.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정(1982. 01. 06 조례 제0692호)  
 개정(1983. 01. 17 조례 제0830호)  
 개정(1983. 12. 29 조례 제0864호)  
 개정(1984. 08. 01 조례 제0945호)  
 개정(1985. 01. 28 조례 제0970호)  
 개정(1985. 10. 20 조례 제1005호)  
 개정(1989. 02. 20 조례 제1204호)  
 개정(1989. 05. 10 조례 제1221호)  
 개정(1996. 06. 24 조례 제1658호)  
 개정(1999. 01. 18 조례 제1750호)

**제1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임용권자)** ①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 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제3조(신규임용)** ①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

② 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

④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임용구비 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전보임용)** ① 고용직공무원은 임용권자 단위기간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경우 전보 임 용원칙 및 전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시군 소속 기관내에 전출 또는 전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84.08.01>

제4조의2 <삭제 1996.06.24>

제5조(근무상한 연령) ① 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 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전문개정 1983.03.17>

③ 임용권자는 별표의 근무상한 연령이 55세이하인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당해 고용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고용직공무원의 담당직무의 특수성, 직무 수행능력 및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985.01.28>

제6조(당연퇴직) 고용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1983.01.17>

제7조(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지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제8조(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01.18 조례 제1750호>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신설 1999.01.18 조례제1750호>

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공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신설 1999.01.18 조례제1750호>

②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 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

여야 한다. <신설 1999.01.18 조례제1750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신설 1999.01.18 조례제1750호>

**제9조(병역 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고용직공무원이 제8조제1호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사업소 및 산하기관 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이하 "휴직자정원 관리단위"라 한다) 으로 하여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별 정원을 감안하여 군수가 조정임용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휴직자 정원관리 단위기관의 고용직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제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①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행한다.

② 공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 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지방고용원(휴직중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감봉처분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봉처분에 있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폐지규칙) 정선군지방고용원규칙(규칙 제332호 1980.01.29)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8.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종 잡무수는 2종 보조수(2종 잡무수 중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2종 사역수)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5.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대상자 및 신규임용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조례 별표에서 신설 규정한 "방법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당시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서 재직중인 방법대원에 한하여 신규 임용하고 이 경우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89.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명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직명이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0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법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중 제5조제1항·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인 자와 1999년6월30일인 자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폐 지 이 유

-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고용직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05.23.)으로 고용직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8. 1.

정선군 조례 제2305호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조례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제정(1998. 08. 25 조례 제1722호)

개정(2005. 06. 09 조례 제19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설치 권장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5.06.09.>

1. 공동주택
2. 의료시설중 병원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 및 영업시설 <개정 2005.06.09>
6. 위락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건축주로서 당해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선정함에 있어 전국공모와 자체심의를 통하여 결정한 작품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미술장식 설치확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군수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 설치계약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감정)** 위원회는 미술장식의 가격 또는 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또는 미술장식의 가격감정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로 한다.
2. 공동주택 : 1,000분의 1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미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한다.
- ④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에 조례시행일 이전의 기존건축물과 시행일 이전에 건축중인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부 칙(2005.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2. 8. 1.

정선군 조례 제2306호

####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를 폐지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p> <p>1. ~ 10. (생략)</p> <p>② 군수는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감면) ① -----<br/>-----<br/>-----<br/>-----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br/>-----.</p> <p>1. ~ 10. (현행과 같음)</p> <p>②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br/>-----.</p> <p>1. ~ 2. (현행과 같음)</p> |

**개 정 이 유**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중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가를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현실에 맞는 법적근거 명시 및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가를 포함하도록 목적조항 개정(제1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정선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폐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2. 8. 1.

정선군 조례 제2307호

###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호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20인 이내의”를 “15인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구성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구성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임한다”를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를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는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u>                                                                                                                        | <u>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u>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u>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u>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u>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u> -----<br>----- <u>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u> -----<br>-----                                                                                                                                                                                                                    |
| 제2조(설치) ① ~ ② (생략)<br>③ <u>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u>                                                                                           | 제2조(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br><u>&lt;삭 제&gt;</u>                                                                                                                                                                                                                                                                     |
|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br>1. ~ 4. (생략)<br>5. <u>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u><br><br>6. (생략)<br>7. <u>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u><br>8. (생략) | 제3조(정관)-----<br>-----<br>1. ~ 4. (현행과 같음)<br>5. <u>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u><br>6. (현행과 같음)<br>7. <u>임원에 관한 사항</u><br>8. (현행과 같음)                                                                                                                                                                           |
| 제4조(기능) <u>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u>                                                                                              |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u>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br><u>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u><br><u>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u><br><u>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u><br>② <u>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u><br><u>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u><br><u>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u><br><u>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u> |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u>20인 이내</u> 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br>② (생략)<br>③ 운영위원회는 <u>재적구성원</u> 과반수의 출석과 <u>출석구성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④ (생략)                                     | 제5조(기구) ① -----<br>--- <u>15인 이하</u> 의-----<br>-----.<br>② (현행과 같음)<br>③----- <u>재적위원</u> -----<br>--- <u>출석위원</u> -----<br>--.<br>④ (현행과 같음)                                                     |
| 제6조(임원) ① (생략)<br>1. ~ 2. (생략)<br>3. 운영위원 <u>20인 이내</u><br>4. (생략)<br>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u>선임한다</u> .<br>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u>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u>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br>④ (생략) | 제6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br>1. ~ 2. (현행과 같음)<br>3. 운영위원 <u>15인 이내</u><br>4. (현행과 같음)<br>②-----<br>----- <u>선출한다</u> .<br>③ ----- <u>협의회</u><br><u>업무를 총괄하고</u> -----<br>--.<br>④ (현행과 같음)               |
| 제7조(사무장) ① <u>협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u> .<br>②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br>③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br>1. <u>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br>2. <u>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u><br>3. <u>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u> |
| 제8조(재정) ① <u>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u> .<br>② <u>협회의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                                                    | 제8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현행                                                                                                                                                                       | 개정안                                                                                                         |
|--------------------------------------------------------------------------------------------------------------------------------------------------------------------------|-------------------------------------------------------------------------------------------------------------|
| <p>③ <u>협의회는 회계연도의 개시 30일전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의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u></p> <p>④ <u>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                                                                                                             |
| <p>제9조(업무수탁) <u>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u></p>                                                                      | <p>제9조(재정) ① <u>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u></p> <p>② <u>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

**개 정 이 유**

- 보건진료원 신분전환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함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사무소 설치규정 삭제(제2조)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의 규정사항 개정(제3조)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수행업무 규정(제4조)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구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제6조)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사무장, 업무수탁 규정 삭제 및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7조~제9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2. 8. 1.

정선군 조례 제2308호

###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정선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가 출동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 상

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 또는 손피자로 인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할 경우에 드는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의 경비를 말한다.

7.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의 손피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피 또는 손피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및 피해물증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피자 확인서를 받는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이 손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의 행위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 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피 등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피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피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부과한다.

1.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숙박시설: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3. 판매·영업·업무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6.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7. 공장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을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8.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발전실, 통신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공장시설)의 면적.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장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된 시설

2. 제3항 제4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 시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사용량별 누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정선군 여비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손괴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손피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수도사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피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군수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피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피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군수가 제2항의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제12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3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군수가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5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을 은폐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된 수도시설물을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

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시설분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text{총사업비}/\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sup>3</sup> 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m<sup>3</sup>당 사업비
  -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4.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을 직접 시공 시 수도시설에 대한 공사비용을 감면한다. 다만, 수도시설공사 준공 이후 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의 적용 대상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 기준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로 하되 부과대상 시설물의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시 설 유 형 별   |                                                                                                                                                                                                                                                        | 부 과 대 상                                                                                           | 산 출 기 준                                 |
|-------------|--------------------------------------------------------------------------------------------------------------------------------------------------------------------------------------------------------------------------------------------------------|---------------------------------------------------------------------------------------------------|-----------------------------------------|
| 주거시설        | 제2호(공동주택)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세대수×2.18인/세대×정선군1인당급수량×1.4(첨두계수)        |
| 숙박시설        | 제15호(숙박시설)                                                                                                                                                                                                                                             | 숙박시설면적 600제곱미터 이상<br>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 건축연면적(제곱미터)×40리터×1.4(첨두계수)              |
| 판매·영업·업무시설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br>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br>제7호(판매시설)<br>제8호(운수시설)<br>제14호(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건축연면적(제곱미터)×30리터×1.4(첨두계수)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0호(교육연구시설)<br>제11호(노유자시설)<br>제12호(수련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건축연면적(제곱미터)×25리터×1.4(첨두계수)              |
| 의료시설        | 제9호(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건축연면적(제곱미터)×40리터×1.4(첨두계수)              |
| 대단위 사업      |                                                                                                                                                                                                                                                        |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                                                             | 일최대 용수 사용량                              |
| 공장시설        | 제17호(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시설 | 사업계획서상 1일용수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용수사용계획량 전액 부과 |
| 기타시설        |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br>제6호(종교시설)<br>제13호(운동시설)<br>제16호(위락시설)<br>제18호(창고시설)<br>제19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br>제20호(자동차관련시설)<br>제21호(동물 및 식물관련시설)<br>제22호(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br>제23호(교정 및 군사시설)<br>제24호(방송통신시설)<br>제25호(발전시설)<br>제26호(묘지관련시설)<br>제27호(관광휴게시설)<br>제28호(장례식장)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br>건축물                                                                         | 건축연면적(제곱미터)×20리터×1.4(첨두계수)              |

나. 침투계수 : 최대급수시의 여유율

다. 시설유형이 명확치 않을 경우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이 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기타시설로 적용하여 부과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times$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구경별 정액제로 한다.

원인자부담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

| 시설유형별  | 부 과 대 상                                               | 산 출 기 준  |            | 비 고                                        |
|--------|-------------------------------------------------------|----------|------------|--------------------------------------------|
| 소규모 시설 | ■ 제1호(단독주택)<br>■ 그 밖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br>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 | 구경별      | 원인자부담금     | 개조 시에<br>는 신규 구<br>경별 분담<br>액 차액을<br>징수한다. |
|        |                                                       | 13mm     | 100,000    |                                            |
|        |                                                       | 20mm     | 300,000    |                                            |
|        |                                                       | 25mm     | 500,000    |                                            |
|        |                                                       | 32mm     | 1,00,000   |                                            |
|        |                                                       | 40mm     | 1,500,000  |                                            |
|        |                                                       | 50mm     | 2,500,000  |                                            |
|        |                                                       | 75mm     | 5,000,000  |                                            |
|        |                                                       | 100mm    | 10,000,000 |                                            |
|        |                                                       | 150mm    | 20,000,000 |                                            |
|        |                                                       | 200mm    | 30,000,000 |                                            |
|        |                                                       | 250mm    | 50,000,000 |                                            |
|        |                                                       | 300mm 이상 | 60,000,000 |                                            |

※ 첨부계수 : 최대급수시의 여유율

1. 하나의 시설물이 각각의 용도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용도별로 원인자 부담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던 시설물에 신규로 급수를 할 경우에도 위 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3. 원인자부담금을 종전에 부과하여 징수한 후 증·개축 또는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과 새로 산출한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한다.
4. 동일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해당 사업의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5. 시설유형별 및 부과대상 시설물 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6. 공장의 경우 공장승인(건축허가등)시 사업계획서상 1일 용수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용수사용 계획량에으로 부과한다.  
(다만, 추후 수돗물 사용량이 1일 신청사용량보다 초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부과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_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_2 = CA\sqrt{2gh}(\text{오리피스공식})$$

$$- Q_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m³/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m³/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m²) = 10,000a(cm²)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cm²)

(수두 10m는 수압1kg/cm²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손실수량(m³)

A = 면적(m²)

L =연장 (m)

##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 제 정 이 유

- 「수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제2조)
  -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제4조~제5조)
- 수도시설 손피자의 의무(제6조)
- 수도시설 손피자의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제8조)
-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제9조)
-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제11조~제12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2. 8. 1.

정선군 조례 제2309호

###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의 조사)** 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에 의한다.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 또는 수질오염 등 영 제7조의2제3항의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정선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및 제7조의2의 절차에 의한다.

**제5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퍼센트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5퍼센트.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7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하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군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 및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8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3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선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세입)** ①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
- 2.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 3. 그 밖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16조(관리자의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퍼센트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은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5-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부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가산금 등)** ①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다.

**제2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말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50퍼센트를 더하여 부과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르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특별회계 설치 경과조치)** 제13조에 따른 지하수특별회계 설치에 국·도비 지원 등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설치를 유예하고 우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운영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4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조사서

###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생 년 월 일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 2. 위반내용

### 3. 위반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24조제1항 관련)

##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시행 :

수신 :

제목 :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에 따라 금○○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20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제24조제3항 관련)

**과태료 납부 독촉장**

|            |             |            |      |  |
|------------|-------------|------------|------|--|
| 납 부<br>의무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             |            |      |  |
| 위 반 사 항    |             |            |      |  |
| 과 태 료 금 액  | 금 원<br>(₩ ) | 당초<br>납부기일 |      |  |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제27조제1항 관련)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             |  |
|--------------------|----------|--------------|-------------|--|
| 신청인                | 성 명      | (한글)<br>(한자)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과 태 료<br>처분내역      | 부 과 기 관  |              | 납부통지서<br>번호 |  |
|                    | 고지받은 일자  |              | 과태료 금액      |  |
|                    | 과태료 처분사유 |              |             |  |
| 과태료 처분에<br>대한 불복사유 |          |              |             |  |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제27제1항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27조제2항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행 :

수신 : ○○법원장

발 신 : 정 선 군 수 (인)

제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과태료 처분에<br>대한 이의제기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과태료 처분내역            | 고지일자       |  | 과태료금액   |  |
|                     | 이의제기<br>일자 |  | 이의제기 사유 |  |

- 붙임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제29조 관련)

**과태료 수납부**

[illegible]

**제 정 이 유**

-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규정(제5조)
-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및 주기 규정(제6조~제7조)
-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제8조)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규정(제13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제17조)
- 부담금 납입절차, 감면, 경감 및 가산금 등 규정(제18조~제21조)

#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2-68호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고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로 부터 승인받은 2011회계연도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7. .

정 선 군 수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 1. 결산개황

(단위:원)

| 회계별                  | 예산현액<br>㉠       | 세입결산액<br>㉡      | 세출결산액<br>㉢      | 잉여금<br>㉡-㉢     |
|----------------------|-----------------|-----------------|-----------------|----------------|
| 합 계                  | 374,536,387,680 | 383,590,954,554 | 316,559,880,045 | 67,031,074,509 |
| 일 반 회 계              | 333,617,243,510 | 341,389,655,735 | 285,407,520,545 | 55,982,135,190 |
| 특 별 회 계              | 40,919,144,170  | 42,201,298,819  | 31,152,359,500  | 11,048,939,319 |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9,476,005,000   | 9,085,015,238   | 7,543,895,840   | 1,541,119,398  |
| 기타특별회계               | 31,443,139,170  | 33,116,283,581  | 23,608,463,660  | 9,507,819,921  |
| 의료급여기금<br>특별회계       | 614,897,000     | 614,441,680     | 583,274,760     | 31,166,920     |
| 정선군임대아파트<br>관리운영특별회계 | 1,221,345,000   | 2,702,056,347   | 230,809,460     | 2,471,246,887  |
| 농공단지조성 및<br>관리사업특별회계 | 52,567,000      | 52,582,784      | 20,000,000      | 32,582,784     |
| 기반시설부담금<br>특별회계      | 540,867,300     | 470,162,044     | 417,822,010     | 52,340,034     |
| 장기미집행시설<br>대지보상특별회계  | 305,559,000     | 307,328,260     | 204,346,200     | 102,982,060    |
| 주택사업특별회계             | 25,640,000      | 94,114,860      | 0               | 94,114,860     |
| 주차장특별회계              | 244,678,000     | 260,456,348     | 120,044,370     | 140,411,978    |
| 수질개선특별회계             | 28,437,585,870  | 28,615,141,258  | 22,032,166,860  | 6,582,974,398  |

## 2. 세입·세출 결산 현황

## 가. 세입결산

(단위:원)

| 회계별                  | 예산현액<br>㉠       | 징수결정액<br>㉡      | 수 납 액<br>㉢      | 미수납액<br>㉡-㉢   |
|----------------------|-----------------|-----------------|-----------------|---------------|
| 합 계                  | 374,536,387,680 | 389,657,067,755 | 383,590,954,554 | 6,066,113,201 |
| 일반회계                 | 333,617,243,510 | 346,495,964,765 | 341,389,655,735 | 5,106,309,030 |
| 특별회계                 | 40,919,144,170  | 43,161,102,990  | 42,201,298,819  | 959,804,171   |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9,476,005,000   | 9,422,727,508   | 9,085,015,238   | 337,712,270   |
| 기타특별회계               | 31,443,139,170  | 33,738,375,482  | 33,116,283,581  | 622,091,901   |
| 의료급여기금<br>특별회계       | 614,897,000     | 614,441,680     | 614,441,680     | 0             |
| 정선군임대아파트<br>관리운영특별회계 | 1,221,345,000   | 2,702,056,347   | 2,702,056,347   | 0             |
| 농공단지조성 및<br>관리사업특별회계 | 52,567,000      | 52,582,784      | 52,582,784      | 0             |
| 기반시설부담금<br>특별회계      | 540,867,300     | 470,162,044     | 470,162,044     | 0             |
| 장기미집행시설<br>대지보상특별회계  | 305,559,000     | 307,328,260     | 307,328,260     | 0             |
| 주택사업특별회계             | 25,640,000      | 94,114,860      | 94,114,860      | 0             |
| 주차장특별회계              | 244,678,000     | 801,301,623     | 260,456,348     | 540,845,275   |
| 수질개선특별회계             | 28,437,585,870  | 28,696,387,884  | 28,615,141,258  | 81,246,626    |

## 나. 세출결산

(단위:원)

| 회계별                  | 예산액<br>㉑        | 예산현액<br>㉒       | 지출액<br>㉓        | 이월액<br>㉔                          | 집행잔액<br>㉒-㉓-㉔  |
|----------------------|-----------------|-----------------|-----------------|-----------------------------------|----------------|
| 합 계                  | 310,346,832,000 | 374,536,387,680 | 316,559,880,045 | 43,530,254,796<br>(1,634,000,000) | 14,446,252,839 |
| 일반회계                 | 270,529,099,000 | 333,617,243,510 | 285,407,520,545 | 38,591,922,596                    | 9,617,800,369  |
| 특별회계                 | 39,817,733,000  | 40,919,144,170  | 31,152,359,500  | 4,938,332,200<br>(1,634,000,000)  | 4,828,452,470  |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9,464,035,000   | 9,476,005,000   | 7,543,895,840   | 11,500,000                        | 1,920,609,160  |
| 기타특별회계               | 30,353,698,000  | 31,443,139,170  | 23,608,463,660  | 4,926,832,200<br>(1,634,000,000)  | 2,907,843,310  |
| 의료급여기금<br>특별회계       | 614,897,000     | 614,897,000     | 583,274,760     | 0                                 | 31,622,240     |
| 정선군임대아파트<br>관리운영특별회계 | 1,221,345,000   | 1,221,345,000   | 230,809,460     | 0                                 | 990,535,540    |
| 농공단지조성 및<br>관리사업특별회계 | 52,567,000      | 52,567,000      | 20,000,000      | 0                                 | 32,567,000     |
| 기반시설부담금<br>특별회계      | 86,237,000      | 540,867,300     | 417,822,010     | 0                                 | 123,045,290    |
| 장기미집행시설<br>대지보상특별회계  | 305,559,000     | 305,559,000     | 204,346,200     | 0                                 | 101,212,800    |
| 주택사업특별회계             | 25,640,000      | 25,640,000      | 0               | 0                                 | 25,640,000     |
| 주차장특별회계              | 244,678,000     | 244,678,000     | 120,044,370     | 0                                 | 124,633,630    |
| 수질개선특별회계             | 27,802,775,000  | 28,437,585,870  | 22,032,166,860  | 4,926,832,200<br>(1,634,000,000)  | 1,478,586,810  |

※ ( )안은 자금없는 이월액

## 다. 기능별·성질별 현황

## (1) 일반회계

(단위 : 원)

| 세입       |                 |       | 세출          |                 |       |
|----------|-----------------|-------|-------------|-----------------|-------|
| 구분       | 결산액             |       | 구분          | 결산액             |       |
| 계        | 수납금액            | 비율    | 계           | 지출금액            | 비율    |
|          | 341,389,655,735 | 100   |             | 285,407,520,545 | 100   |
| 1. 지방세   | 30,534,348,740  | 9.18  | 1. 일반공공행정   | 17,002,346,910  | 5.96  |
| 보통세      | 31,343,325,030  | 9.18  | 2. 공공질서및안전  | 13,883,351,970  | 4.86  |
| 지난년도수입   | △808,976,290    | -0.24 | 3. 교육       | 5,128,397,970   | 1.80  |
| 2. 세외수입  | 96,405,740,615  | 28.24 | 4. 문화및관광    | 22,011,563,965  | 7.71  |
| 재산임대수입   | 575,055,900     | 0.17  | 5. 환경보호     | 22,251,775,660  | 7.80  |
| 사용료수입    | 2,786,375,617   | 0.82  | 6. 사회복지     | 43,885,197,208  | 15.38 |
| 수수료수입    | 677,396,240     | 0.20  | 7. 보건       | 4,470,556,270   | 1.57  |
| 사업수입     | 11,381,099,650  | 3.33  | 8. 농림해양수산   | 39,577,887,025  | 13.87 |
| 징수교부금    | 340,236,960     | 0.10  | 9. 산업·중소기업  | 1,021,796,520   | 0.36  |
| 이자수입     | 1,731,187,366   | 0.51  | 10. 수송및교통   | 15,292,094,660  | 5.36  |
| 재산매각     | 132,040,330     | 0.04  | 11. 국토및지역개발 | 65,244,032,987  | 22.86 |
| 잉여금      | 12,090,523,000  | 3.54  | 12. 예비비     | 0               | 0.00  |
| 이월금      | 64,283,973,460  | 18.83 | 13. 기타      | 35,638,519,400  | 12.49 |
| 융자금원금수입  | 190,315,830     | 0.06  | 1. 인건비      | 32,320,336,310  | 11.32 |
| 부담금      | 0               | 0.00  | 2. 물건비      | 16,265,492,640  | 5.70  |
| 잡수입      | 2,089,613,747   | 0.61  | 3. 경상이전     | 61,087,363,068  | 21.40 |
| 지난년도수입   | 127,922,515     | 0.04  | 4. 자본지출     | 167,482,212,517 | 58.68 |
| 3. 지방교부세 | 113,840,396,000 | 33.35 | 5. 보전재원     | 1,250,000,000   | 0.44  |
| 4. 재정보전금 | 4,669,872,000   | 1.37  | 6. 내부거래     | 5,556,936,000   | 1.95  |
| 5. 보조금   | 95,939,298,380  | 28.10 | 7. 예비비및기타   | 1,445,180,010   | 0.51  |
| 국비보조금    | 57,487,041,000  | 16.84 |             |                 |       |
| 도비보조금    | 38,452,257,380  | 11.26 |             |                 |       |

## (2)특별회계

(단위:원)

| 구 분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비 고 |
|----------------------|----------------|----------------|----------------|-----|
| 합 계                  | 40,919,144,170 | 42,201,298,819 | 31,152,359,500 |     |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9,476,005,000  | 9,085,015,238  | 7,543,895,840  |     |
| 기타특별회계               | 31,443,139,170 | 33,116,283,581 | 23,608,463,660 |     |
| 의료급여기금<br>특별회계       | 614,897,000    | 614,441,680    | 583,274,760    |     |
| 정선군임대아파트<br>관리운영특별회계 | 1,221,345,000  | 2,702,056,347  | 230,809,460    |     |
| 농공단지조성 및<br>관리사업특별회계 | 52,567,000     | 52,582,784     | 20,000,000     |     |
| 기반시설부담금<br>특별회계      | 540,867,300    | 470,162,044    | 417,822,010    |     |
| 장기미집행시설<br>대지보상특별회계  | 305,559,000    | 307,328,260    | 204,346,200    |     |
| 주택사업특별회계             | 25,640,000     | 94,114,860 0   |                |     |
| 주차장특별회계              | 244,678,000    | 260,456,348    | 120,044,370    |     |
| 수질개선특별회계             | 28,437,585,870 | 28,615,141,258 | 22,032,166,860 |     |



## 3. 군민 부담 상황

## 가. 세목별 군세 징수현황

(단위:원)

| 세목별    | 징수목표액<br>㉠     | 부과액<br>㉡       | 징수액<br>㉢       | 불납결손액<br>㉣  | 미 수 액<br>㉡-(㉢+㉣) |
|--------|----------------|----------------|----------------|-------------|------------------|
| 계      | 28,636,432,000 | 32,692,015,810 | 30,534,348,740 | 297,533,000 | 1,860,134,070    |
| 주민세    | 267,500,000    | 359,391,100    | 336,753,540    | 108,150     | 22,529,410       |
| 재산세    | 3,812,660,000  | 4,759,055,250  | 4,553,079,310  | 9,035,430   | 196,940,510      |
| 자동차세   | 3,807,072,000  | 4,441,866,010  | 4,103,713,560  | 950,820     | 337,201,630      |
| 담배소비세  | 4,000,200,000  | 4,212,254,710  | 4,212,254,710  | 0 0         |                  |
| 지방소득세  | 16,519,000,000 | 18,351,208,220 | 18,137,523,910 | 473,570     | 213,210,740      |
| 지난년도수입 | 230,000,000    | 568,240,520    | △808,976,290   | 286,965,030 | 1,090,251,780    |

## 나. 군세 부담액 현황

(단위:원,명,세대)

| 군민1인당<br>부 담 액 | 세대당<br>부담액 | 인구수 및 세대수 |        | 비 고 |
|----------------|------------|-----------|--------|-----|
|                |            | 인구수       | 세대수    |     |
| 759,920        | 1,609,782  | 40,181    | 18,968 |     |

## 4. 채권 운용 상황

(단위:원)

| 회계별  | 전년도말<br>㉠     | 2011년 운용상황    |               | 2011년도말<br>㉠+㉡-㉢ |
|------|---------------|---------------|---------------|------------------|
|      |               | 발생액㉡          | 소멸액㉢          |                  |
| 계    | 5,429,539,400 | 5,443,846,200 | 3,556,975,160 | 7,316,410,440    |
| 일반회계 | 2,337,417,500 | 2,580,031,040 | 765,742,830   | 4,151,705,710    |
| 특별회계 | 2,791,232,330 | 2,847,484,850 | 2,791,232,330 | 2,847,484,850    |
| 기 금  | 300,889,570   | 16,330,310    | 0             | 317,219,880      |

## 5. 채무 운용 상황

(단위:원)

| 회계별  | 전년도말<br>㉠      | 2011년 운용상황 |               | 2011년도말<br>㉠+㉡-㉢ |
|------|----------------|------------|---------------|------------------|
|      |                | 발생액㉡       | 소멸액㉢          |                  |
| 일반회계 | 21,538,000,000 | 0          | 1,250,000,000 | 20,288,000,000   |

## 6. 기금 운용 상황

(단위:원)

| 구 분             | 전년도말<br>현 재 액<br>㉠ | 당해연도 증감액㉡     |               |             | 당해연도말<br>현 재 액<br>㉠+㉡ |
|-----------------|--------------------|---------------|---------------|-------------|-----------------------|
|                 |                    | 계             | 수납액           | 지출액         |                       |
| 합 계             | 35,136,125,153     | 1,815,010,382 | 2,168,225,792 | 353,215,410 | 36,951,135,535        |
| 청사건립기금          | 3,818,480,612      | 10,107,557    | 104,713,557   | 94,606,000  | 3,828,588,169         |
| 사회복지기금          | 251,632,021        | 27,232,509    | 47,232,509    | 20,000,000  | 278,864,530           |
| 저소득주민자녀<br>장학기금 | 22,024,185,059     | 595,988,076   | 595,988,076   | 0           | 22,620,173,135        |
| 농업농촌발전<br>안전기금  | 8,083,601,300      | 1,007,428,760 | 1,007,428,760 | 0           | 9,091,030,060         |
| 재난관리기금          | 815,835,683        | 185,618,052   | 402,222,512   | 216,604,460 | 1,001,453,735         |
| 식품진흥기금          | 142,390,478        | △11,364,572   | 10,640,378    | 22,004,950  | 131,025,906           |

## 7. 공유재산 상황

## 가. 공유재산

(단위:원)

| 구 분      |         | 전년도말<br>현재액<br>㉑ | 2011년도 증감액     |                | 2011년말<br>현재액<br>㉑+㉒-㉓ |
|----------|---------|------------------|----------------|----------------|------------------------|
|          |         |                  | 증㉒             | 감㉓             |                        |
| 계        |         | 750,247,523,975  | 45,586,093,131 | 36,950,737,804 | 758,882,879,284        |
| 행정<br>재산 | 소 계     | 428,756,359,633  | 31,298,155,834 | 31,772,572,107 | 428,281,943,360        |
|          | 공용 재산   | 153,070,255,671  | 17,646,198,368 | 17,618,672,003 | 153,097,782,036        |
|          | 공공용재산   | 260,788,521,610  | 13,537,024,926 | 14,052,800,004 | 260,272,746,532        |
|          | 기업용재산   | 14,887,088,225   | 114,932,540    | 101,100,100    | 14,900,920,665         |
|          | 보 존 재 산 | 10,494,127       | 0              | 0              | 10,494,127             |
| 일 반 재 산  |         | 321,491,164,324  | 14,287,937,297 | 5,178,165,697  | 330,600,935,924        |

## 나. 물 품

(단위:개, 천원)

| 정수 | 전년도말현재액<br>㉑ |           | 2011년도 증감액 |         |     |         | 2011년말 현재액<br>㉑+㉒-㉓ |           |
|----|--------------|-----------|------------|---------|-----|---------|---------------------|-----------|
|    | 건수           | 금액        | 취득㉒        |         | 처분㉓ |         | 건수                  | 금액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31 | 334          | 3,884,123 | 54         | 561,142 | 12  | 202,018 | 376                 | 4,243,247 |

## 8. 공기업 운영현황(상수도사업)

## 가. 대차대조표

(단위 : 원)

| 과 목            | 금 액                   |                       | 증 감                   |
|----------------|-----------------------|-----------------------|-----------------------|
|                | 2011년도(당기)            | 2010년도(전기)            |                       |
| 1. 유동자산        | 1,898,295,138         | 2,080,109,219         | △181,814,081          |
| 가. 당좌자산        | 1,849,813,288         | 2,039,753,839         | △189,940,551          |
| ○ 현금예금         | 1,584,070,488         | 1,764,541,859         | △180,471,371          |
| ○ 대손충당금        | 265,742,800           | 275,211,980           | △9,469,180            |
| ○ 미수수익         | 0                     | 0                     | 0                     |
| 나. 재고자산        | 48,481,850            | 40,355,380            | 8,126,470             |
| ○ 저장품          | 48,481,850            | 40,355,380            | 8,126,470             |
| 2. 비유동자산       | 47,830,327,114        | 49,333,812,171        | △1,503,485,057        |
| 가. 투자자산        | 324,000               | 324,000               | 0                     |
| 나. 가동설비자산      | 47,830,003,114        | 49,333,488,171        | △1,503,485,057        |
| <b>자 산 총 계</b> | <b>49,728,622,252</b> | <b>51,413,921,390</b> | <b>△1,685,299,138</b> |
| 1. 유동부채        | 42,951,090            | 42,972,690            | △21,600               |
| 가. 예수금         | 42,951,090            | 42,972,690            | △21,600               |
| 나. 미지급비용       | 0                     | 0                     | 0                     |
| 2. 고정부채        | 0                     | 0                     | 0                     |
| <b>부 채 총 계</b> | <b>42,951,090</b>     | <b>42,972,690</b>     | <b>△21,600</b>        |
| 1. 자본금         | 6,006,368,973         | 6,006,368,973         | 0                     |
| 가. 원시자본금       | 6,006,368,973         | 6,006,368,973         | 0                     |
| 2. 자본잉여금       | 50,876,109,488        | 50,125,429,158        | 750,680,330           |
| 가. 국고보조금       | 6,412,340,000         | 6,412,340,000         | 0                     |
| 나. 도비보조금       | 1,309,694,000         | 1,309,694,000         | 0                     |
| 다. 타회계보조금      | 28,772,360,800        | 28,472,360,800        | 300,000,000           |
| 라. 시설분담금       | 1,134,353,800         | 1,085,023,800         | 49,330,000            |
| 마. 원인자부담금      | 676,000,000           | 676,000,000           | 0                     |
| 바. 재평가적립금      | 8,831,427,200         | 8,831,427,200         | 0                     |
| 사. 기부금         | 3,739,933,688         | 3,338,583,358         | 401,350,330           |
| 3. 결손금         | 7,196,807,299         | 4,760,849,431         | 2,435,957,868         |
| <b>자 본 총 계</b> | <b>49,685,671,162</b> | <b>51,370,948,700</b> | <b>△1,685,277,538</b> |

## 나.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과 목          | 금 액           |               | 증 감          |
|--------------|---------------|---------------|--------------|
|              | 2011년도(당기)    | 2010년도(전기)    |              |
| 1. 영업수익      | 6,608,102,370 | 6,168,327,230 | 439,775,140  |
| 가. 급수수익      | 6,173,578,320 | 5,942,532,450 | 231,045,870  |
| 나. 급수공사수익    | 408,270,000   | 207,907,080   | 200,362,920  |
| 다. 기타영업수익    | 26,254,050    | 17,887,700    | 8,366,350    |
| 2. 영업비용      | 9,466,557,487 | 8,751,587,068 | 714,970,419  |
| 가. 원수및취수비    | 686,795,000   | 711,416,390   | △24,621,390  |
| 나. 정수비       | 3,202,129,860 | 2,713,930,770 | 488,199,090  |
| 다. 배급수비      | 587,159,510   | 714,247,040   | △127,087,530 |
| 라. 일반관리비     | 985,245,410   | 888,178,257   | 97,067,153   |
| 마. 징수및수용가관리비 | 493,891,110   | 514,129,570   | △20,238,460  |
| 바. 급수공사비     | 401,350,330   | 195,952,960   | 205,397,370  |
| 사. 감가상각비     | 2,896,307,937 | 2,881,551,141 | 14,756,796   |
| 아. 대손상각비     | 25,952,730    | 5,326,690     | 20,626,040   |
| 자. 무형자산상각비   | 187,725,600   | 126,854,250   | 60,871,350   |
| 차. 기타영업비용    | 0             | 0             | 0            |
| 3. 영업손실      | 2,858,455,117 | 2,583,259,838 | 275,195,279  |
| 4. 영업외수익     | 422,497,249   | 574,545,603   | △152,048,354 |
| 가. 이자수익      | 39,952,209    | 21,456,563    | 18,495,646   |
| 나. 타회계전입금수익  | 82,538,410    | 52,832,050    | 29,706,360   |
| 나. 타회계지원금수익  | 300,000,000   | 500,000,000   | △200,000,000 |
| 다. 기타영업외수익   | 6,630         | 256,990       | △250,360     |
| 5. 영업외비용     | 0             | 30,907,228    | △30,907,228  |
| 6. 경상손실      | 2,435,957,868 | 2,039,621,463 | 396,336,405  |
| 7. 특별이익      | 0             | 0             | 0            |
| 8. 특별손실      | 0             | 0             | 0            |
| 9. 당기순손실     | 2,435,957,868 | 2,039,621,463 | 396,336,405  |

## 재 무 제 표

- ◆ 재정상태보고서
- ◆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
- ◆ 순자산변동보고서

## 재 정 상 태 보 고 서

당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10년 12월 31일

정선군

(단위 : 원)

| 과 목                 | 당해년도 ( 2011년 )   |                 |                |               |                  |                  |
|---------------------|------------------|-----------------|----------------|---------------|------------------|------------------|
|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br>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
| 자산                  |                  |                 |                |               |                  |                  |
| I. 유동자산             | 60,726,514,810   | 12,937,265,615  | 20,515,678,391 | 1,898,295,138 | -                | 96,077,753,95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5,982,135,190   | 7,567,819,921   | 15,331,314,131 | 1,541,119,398 | -                | 80,422,388,640   |
| 단기금융상품              | -                | 1,940,000,000   | 4,532,067,095  | -             | -                | 6,472,067,095    |
| 미수세금                | 1,860,134,070    | -               | -              | -             | -                | 1,860,134,070    |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 (195,093,050)    | -               | -              | -             | -                | (195,093,050)    |
| 미수세외수입금             | 2,568,651,430    | 588,594,121     | -              | 337,712,270   | -                | 3,494,957,821    |
|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       | (208,358,890)    | (5,885,941)     | -              | (71,969,470)  | -                | (286,214,301)    |
| 미수징수교부금             | -                | -               | -              | -             | -                | -                |
| 미수정부간이전수익           | -                | -               | -              | -             | -                | -                |
| 단기융자금               | -                | 330,523,865     | 127,203,190    | -             | -                | 457,727,055      |
|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 -                | (3,305,238)     | (1,272,040)    | -             | -                | (4,577,278)      |
| 단기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                | -                |
| 재고자산                | 23,538,908       | -               | -              | 48,481,850    | -                | 72,020,758       |
| 기타유동자산              | 695,507,152      | 2,519,518,887   | 526,366,015    | 42,951,090    | -                | 3,784,343,144    |
| II. 투자자산            | 39,176,959,288   | -               | 17,087,754,309 | -             | (29,272,360,800) | 26,992,352,797   |
| 장기금융상품              | -                | -               | 17,087,754,309 | -             | -                | 17,087,754,309   |
| 장기융자금               | 4,151,705,710    | -               | -              | -             | -                | 4,151,705,710    |
|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 (16,839,222)     | -               | -              | -             | -                | (16,839,222)     |
| 장기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                | -                |
| 장기투자증권              | 5,343,000,000    | -               | -              | -             | -                | 5,343,000,000    |
| 기타투자자산              | 29,699,092,800   | -               | -              | -             | (29,272,360,800) | 426,732,000      |
| III. 일반유형자산         | 186,965,984,031  | 6,590,874,786   | 87,338,166     | -             | -                | 193,644,196,983  |
| 토지                  | 115,180,250,596  | 2,957,784,420   | -              | -             | -                | 118,138,035,016  |
| 입목                  | 13,984,710,276   | 203,346,200     | -              | -             | -                | 14,188,056,476   |
| 건물                  | 57,549,576,853   | 4,197,394,650   | -              | -             | -                | 61,746,971,503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3,876,192,808) | (1,901,959,343) | -              | -             | -                | (15,778,152,151) |
| 구축물                 | 7,429,830,452    | 421,830,000     | -              | -             | -                | 7,851,660,452    |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2,594,885,033)  | (201,625,622)   | -              | -             | -                | (2,796,510,655)  |
| 기계장치                | 5,004,745,840    | 986,299,600     | 79,400,590     | -             | -                | 6,070,446,030    |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2,818,068,743)  | (106,842,003)   | (11,248,408)   | -             | -                | (2,936,159,154)  |
| 차량운반구               | 3,119,239,686    | 25,632,800      | -              | -             | -                | 3,144,872,486    |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2,468,936,286)  | (20,648,643)    | -              | -             | -                | (2,489,584,929)  |
| 집기비품                | 15,174,648,443   | 48,646,680      | 134,521,850    | -             | -                | 15,357,816,973   |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11,055,600,592) | (25,137,370)    | (115,335,866)  | -             | -                | (11,196,073,828) |
| 임차계량자산              | -                | -               | -              | -             | -                | -                |
| 임차계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                | -                |
| 기타일반유형자산            | 1,165,450,860    | 10,069,000      | -              | -             | -                | 1,175,519,860    |
| 기타일반유형<br>자산감가상각누계액 | (262,604,853)    | (9,165,583)     | -              | -             | -                | (271,770,436)    |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1,433,819,340    | 5,250,000       | -              | -             | -                | 1,439,069,340    |

정선군

(단위 : 원)

| 과 목              | 직전연도 ( 2010년 )   |                 |                |               |                  |                  |
|------------------|------------------|-----------------|----------------|---------------|------------------|------------------|
|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
| 자산               |                  |                 |                |               |                  |                  |
| I. 유동자산          | 82,013,730,418   | 5,435,123,132   | 35,786,218,019 | 2,080,109,219 | -                | 125,315,180,78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6,374,496,460   | 1,976,150,161   | 9,168,110,332  | 1,721,569,169 | -                | 89,240,326,122   |
| 단기금융상품           | -                | 145,000,000     | 25,968,014,821 | -             | -                | 26,113,014,821   |
| 미수세금             | 1,835,719,630    | -               | -              | -             | -                | 1,835,719,630    |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 (125,855,490)    | -               | -              | -             | -                | (125,855,490)    |
| 미수세외수입금          | 2,672,361,610    | 537,374,521     | -              | 321,228,720   | -                | 3,530,964,851    |
| 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    | (107,794,190)    | (5,373,760)     | -              | (46,016,740)  | -                | (159,184,690)    |
| 미수징수교부금          | -                | -               | -              | -             | -                | -                |
| 미수정부간이전수익        | -                | -               | -              | -             | -                | -                |
| 단기융자금            | -                | 337,153,580     | 127,203,190    | -             | -                | 464,356,770      |
|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 -                | (3,371,540)     | (1,272,040)    | -             | -                | (4,643,580)      |
| 단기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                | -                |
| 재고자산             | 56,307,633       | -               | -              | 40,355,380    | -                | 96,663,013       |
| 기타유동자산           | 1,308,494,765    | 2,448,190,170   | 524,161,716    | 42,972,690    | -                | 4,323,819,341    |
| II. 투자자산         | 37,079,510,300   | -               | -              | -             | (28,972,360,800) | 8,107,149,500    |
| 장기금융상품           | -                | -               | -              | -             | -                | -                |
| 장기융자금            | 2,337,417,500    | -               | -              | -             | -                | 2,337,417,500    |
|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 -                | -               | -              | -             | -                | -                |
| 장기융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                | -                |
| 장기투자증권           | 5,343,000,000    | -               | -              | -             | -                | 5,343,000,000    |
| 기타투자자산           | 29,399,092,800   | -               | -              | -             | (28,972,360,800) | 426,732,000      |
| III. 일반유형자산      | 182,630,998,641  | 6,019,319,194   | 86,765,735     | -             | -                | 188,737,083,570  |
| 토지               | 114,602,794,126  | 2,957,784,420   | -              | -             | -                | 117,560,578,546  |
| 임목               | 13,962,172,276   | 203,346,200     | -              | -             | -                | 14,165,518,476   |
| 건물               | 44,409,824,243   | 4,197,394,650   | -              | -             | -                | 48,607,218,893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2,909,623,923) | (1,794,589,610) | -              | -             | -                | (14,704,213,533) |
| 구축물              | 7,258,743,452    | 421,830,000     | -              | -             | -                | 7,680,573,452    |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1,974,844,807)  | (191,729,872)   | -              | -             | -                | (2,166,574,679)  |
| 기계장치             | 4,884,122,840    | 223,000,000     | 79,400,590     | -             | -                | 5,186,523,430    |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2,303,949,874)  | (43,361,110)    | (3,308,355)    | -             | -                | (2,350,619,339)  |
| 차량운반구            | 2,946,286,322    | 25,632,800      | -              | -             | -                | 2,971,919,122    |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2,111,353,457)  | (16,376,510)    | -              | -             | -                | (2,127,729,967)  |
| 집기비품             | 14,174,684,670   | 48,526,680      | 110,420,390    | -             | -                | 14,333,631,740   |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 (9,720,510,044)  | (17,262,371)    | (99,746,890)   | -             | -                | (9,837,519,305)  |
| 임차개량자산           | -                | -               | -              | -             | -                | -                |
|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                | -                |
| 기타일반유형자산         | 550,894,090      | 10,069,000      | -              | -             | -                | 560,963,090      |
| 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 (171,657,503)    | (4,945,083)     | -              | -             | -                | (176,602,586)    |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9,033,416,230    | -               | -              | -             | -                | 9,033,416,230    |



## 재 정 상 태 보 고 서

당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정선군

(단위 : 원)

| 과 목             | 당해년도 ( 2011년 )    |                  |             |                  |          |                   |
|-----------------|-------------------|------------------|-------------|------------------|----------|-------------------|
|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br>특별회계    | 내부거<br>래 | 계                 |
| IV. 주민편의시설      | 364,482,555,285   | 14,148,881,102   | -           | -                | -        | 378,631,436,387   |
| 도서관             | 2,217,943,740     | -                | -           | -                | -        | 2,217,943,740     |
|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 (870,897,792)     | -                | -           | -                | -        | (870,897,792)     |
| 주차장             | 6,194,701,095     | 16,212,854,410   | -           | -                | -        | 22,407,555,505    |
|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 (723,542,964)     | (2,089,418,299)  | -           | -                | -        | (2,812,961,263)   |
| 공원              | 16,005,529,792    | -                | -           | -                | -        | 16,005,529,792    |
| 공원감가상각누계액       | (1,929,777,439)   | -                | -           | -                | -        | (1,929,777,439)   |
| 박물관및미술관         | 2,822,650,835     | -                | -           | -                | -        | 2,822,650,835     |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 (331,033,090)     | -                | -           | -                | -        | (331,033,090)     |
| 동물원             | -                 | -                | -           | -                | -        | -                 |
|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        | -                 |
| 수목원및휴양림         | 9,179,764,930     | -                | -           | -                | -        | 9,179,764,930     |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 (320,035,811)     | -                | -           | -                | -        | (320,035,811)     |
| 문화및관광시설         | 54,475,583,161    | -                | -           | -                | -        | 54,475,583,161    |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2,739,124,980)  | -                | -           | -                | -        | (12,739,124,980)  |
| 체육시설            | 134,835,806,867   | 27,323,480       | -           | -                | -        | 134,863,130,347   |
|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7,980,143,854)   | (1,878,489)      | -           | -                | -        | (7,982,022,343)   |
| 사회복지시설          | 96,885,732,281    | -                | -           | -                | -        | 96,885,732,281    |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1,336,968,221)  | -                | -           | -                | -        | (11,336,968,221)  |
| 의료시설            | 18,166,563,433    | -                | -           | -                | -        | 18,166,563,433    |
|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3,653,952,092)   | -                | -           | -                | -        | (3,653,952,092)   |
| 교육시설            | 900,000           | -                | -           | -                | -        | 900,000           |
|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95,000)         | -                | -           | -                | -        | (195,000)         |
| 기타주민편의시설        | 53,414,432,256    | -                | -           | -                | -        | 53,414,432,256    |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2,626,372,924)  | -                | -           | -                | -        | (12,626,372,924)  |
|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 22,794,991,062    | -                | -           | -                | -        | 22,794,991,062    |
| V. 사회기반시설       | 1,291,703,414,933 | 85,583,603,905   | 101,803,634 | 47,312,518,764   | -        | 1,424,701,341,236 |
| 도로              | 915,330,268,393   | 2,469,376,140    | -           | -                | -        | 917,799,644,533   |
| 도시철도            | -                 | -                | -           | -                | -        | -                 |
| 상수도시설           | 42,855,839,110    | -                | -           | 89,415,180,289   | -        | 132,271,019,399   |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0,899,284,940)  | -                | -           | (42,102,661,525) | -        | (53,001,946,465)  |
| 수질정화시설          | 11,565,842,276    | 66,240,690,476   | -           | -                | -        | 77,806,532,752    |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280,290,462)   | (16,206,745,380) | -           | -                | -        | (17,487,035,842)  |
| 하천부속시설          | 122,997,526,573   | -                | 45,953,200  | -                | -        | 123,043,479,773   |
| 폐기물처리시설         | 5,932,333,487     | -                | -           | -                | -        | 5,932,333,487     |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 (2,296,094,198)   | -                | -           | -                | -        | (2,296,094,198)   |
| 재활용시설           | 2,179,117,980     | -                | -           | -                | -        | 2,179,117,980     |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 (322,746,818)     | -                | -           | -                | -        | (322,746,818)     |
| 농수산기반시설         | 103,943,358,553   | 783,833,280      | -           | -                | -        | 104,727,191,833   |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31,687,198,098)  | (17,962,846)     | -           | -                | -        | (31,705,160,944)  |

정선군

(단위 : 원)

| 과 목             | 직전연도 ( 2010년 )    |                  |             |                  |          |                   |
|-----------------|-------------------|------------------|-------------|------------------|----------|-------------------|
|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br>특별회계    | 내부<br>거래 | 계                 |
| IV. 주민편의시설      | 328,766,527,119   | 14,411,746,432   | -           | -                | -        | 343,178,273,551   |
| 도서관             | 2,192,343,740     | -                | -           | -                | -        | 2,192,343,740     |
|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 (814,649,953)     | -                | -           | -                | -        | (814,649,953)     |
| 주차장             | 5,900,270,275     | 16,142,970,170   | -           | -                | -        | 22,043,240,445    |
|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 (412,433,780)     | (1,757,351,816)  | -           | -                | -        | (2,169,785,596)   |
| 공원              | 12,548,024,482    | -                | -           | -                | -        | 12,548,024,482    |
| 공원감가상각누계액       | (1,358,996,601)   | -                | -           | -                | -        | (1,358,996,601)   |
| 박물관및미술관         | 2,822,650,835     | -                | -           | -                | -        | 2,822,650,835     |
|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 (279,584,442)     | -                | -           | -                | -        | (279,584,442)     |
| 동물원             | -                 | -                | -           | -                | -        | -                 |
|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        | -                 |
| 수목원및휴양림         | 839,800,630       | -                | -           | -                | -        | 839,800,630       |
|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 (54,017,638)      | -                | -           | -                | -        | (54,017,638)      |
| 문화및관광시설         | 51,216,620,461    | -                | -           | -                | -        | 51,216,620,461    |
|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0,601,224,502)  | -                | -           | -                | -        | (10,601,224,502)  |
| 체육시설            | 50,926,790,957    | 27,323,480       | -           | -                | -        | 50,954,114,437    |
|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6,352,049,024)   | (1,195,402)      | -           | -                | -        | (6,353,244,426)   |
| 사회복지시설          | 94,328,438,241    | -                | -           | -                | -        | 94,328,438,241    |
|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 (8,456,665,242)   | -                | -           | -                | -        | (8,456,665,242)   |
| 의료시설            | 17,271,001,483    | -                | -           | -                | -        | 17,271,001,483    |
|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 (3,158,146,000)   | -                | -           | -                | -        | (3,158,146,000)   |
| 교육시설            | 900,000           | -                | -           | -                | -        | 900,000           |
|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5,000)          | -                | -           | -                | -        | (15,000)          |
| 기타주민편의시설        | 42,874,676,656    | -                | -           | -                | -        | 42,874,676,656    |
|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6,934,027,141)   | -                | -           | -                | -        | (6,934,027,141)   |
|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 86,266,818,682    | -                | -           | -                | -        | 86,266,818,682    |
| V. 사회기반시설       | 1,245,209,808,625 | 79,250,918,522   | 122,956,778 | 48,628,278,221   | -        | 1,373,211,962,146 |
| 도로              | 895,637,301,663   | 2,087,552,670    | -           | -                | -        | 897,724,854,333   |
| 도시철도            | -                 | -                | -           | -                | -        | -                 |
| 상수도시설           | 41,078,869,740    | -                | -           | 87,834,631,809   | -        | 128,913,501,549   |
|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 (8,995,825,467)   | -                | -           | (39,206,353,588) | -        | (48,202,179,055)  |
| 수질정화시설          | 11,398,949,596    | 61,714,578,696   | -           | -                | -        | 73,113,528,292    |
|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 (960,548,159)     | (13,635,486,019) | -           | -                | -        | (14,596,034,178)  |
| 하천부속시설          | 113,720,004,986   | -                | 45,953,200  | -                | -        | 113,765,958,186   |
| 폐기물처리시설         | 5,932,333,487     | -                | -           | -                | -        | 5,932,333,487     |
|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 (1,785,506,375)   | -                | -           | -                | -        | (1,785,506,375)   |
| 재활용시설           | 2,125,688,360     | -                | -           | -                | -        | 2,125,688,360     |
|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 (245,610,887)     | -                | -           | -                | -        | (245,610,887)     |
| 농수산기반시설         | 100,176,463,020   | 779,543,280      | -           | -                | -        | 100,956,006,300   |
| 농수산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 (29,427,015,676)  | -                | -           | -                | -        | (29,427,015,676)  |

## 재 정 상 태 보 고 서

당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정선군

(단위 : 원)

| 과 목                 | 당해년도 ( 2011년 )    |                 |                |                |                  |                   |
|---------------------|-------------------|-----------------|----------------|----------------|------------------|-------------------|
|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br>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
| 댐                   | -                 | -               | -              | -              | -                | -                 |
| 댐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                | -                 |
| 어항및항만시설             | -                 | -               | -              | -              | -                | -                 |
| 어항및항만시설<br>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                | -                 |
| 기타사회기반시설            | 113,198,168,145   | -               | 116,946,900    | -              | -                | 113,315,115,045   |
| 기타사회기반시설<br>감가상각누계액 | (8,194,532,812)   | -               | (61,096,466)   | -              | -                | (8,255,629,278)   |
|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28,381,107,744    | 32,314,412,235  | -              | -              | -                | 60,695,519,979    |
| VI.기타비유동자산          | 723,155,637       | -               | 2,444,445      | 517,808,350    | -                | 1,243,408,432     |
| 보증금                 | -                 | -               | -              | 324,000        | -                | 324,000           |
| 무형자산                | 709,607,363       | -               | 2,444,445      | 517,484,350    | -                | 1,229,536,158     |
| 기타비유동자산             | 13,548,274        | -               | -              | -              | -                | 13,548,274        |
| (자산총계)              | 1,943,778,583,984 | 119,260,625,408 | 37,795,018,945 | 49,728,622,252 | (29,272,360,800) | 2,121,290,489,789 |
| 부채                  | -                 | -               | -              | -              | -                | -                 |
| I. 유동부채             | 3,929,851,962     | 51,701,481      | -              | 42,951,090     | -                | 4,024,504,533     |
| 단기차입금               | -                 | -               | -              | -              | -                | -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1,250,000,000     | -               | -              | -              | -                | 1,250,000,000     |
| 기타유동부채              | 2,679,851,962     | 51,701,481      | -              | 42,951,090     | -                | 2,774,504,533     |
| II. 장기차입부채          | 19,038,000,000    | -               | -              | -              | -                | 19,038,000,000    |
| 장기차입금               | 19,038,000,000    | -               | -              | -              | -                | 19,038,000,000    |
| 지방채증권               | -                 | -               | -              | -              | -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 4,582,346,159     | 100,987         | -              | -              | -                | 4,582,447,146     |
| 퇴직급여충당부채            | 3,339,838,304     | 100,987         | -              | -              | -                | 3,339,939,291     |
| 기타비유동부채             | 1,242,507,855     | -               | -              | -              | -                | 1,242,507,855     |
| (부채총계)              | 27,550,198,121    | 51,802,468      | -              | 42,951,090     | -                | 27,644,951,679    |
| 순자산                 | -                 | -               | -              | -              | -                | -                 |
| I. 고정순자산            | 1,821,493,736,236 | 106,323,359,793 | 191,586,245    | 47,830,003,114 | -                | 1,975,838,685,388 |
| 고정순자산               | 1,821,493,736,236 | 106,323,359,793 | 191,586,245    | 47,830,003,114 | -                | 1,975,838,685,388 |
| II. 특정순자산           | -                 | -               | 37,603,432,700 | -              | -                | 37,603,432,700    |
| 특정순자산               | -                 | -               | 37,603,432,700 | -              | -                | 37,603,432,700    |
| III. 일반순자산          | 94,734,649,627    | 12,885,463,147  | -              | 1,855,668,048  | (29,272,360,800) | 80,203,420,022    |
| 일반순자산               | 94,734,649,627    | 12,885,463,147  | -              | 1,855,668,048  | (29,272,360,800) | 80,203,420,022    |
| (순자산총계)             | 1,916,228,385,863 | 119,208,822,940 | 37,795,018,945 | 49,685,671,162 | (29,272,360,800) | 2,093,645,538,110 |
| (부채와순자산총계)          | 1,943,778,583,984 | 119,260,625,408 | 37,795,018,945 | 49,728,622,252 | (29,272,360,800) | 2,121,290,489,789 |

정선군

(단위 : 원)

| 과 목                 | 직전연도 ( 2010년 )    |                 |                |                |                  |                   |
|---------------------|-------------------|-----------------|----------------|----------------|------------------|-------------------|
|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br>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
| 댐                   | -                 | -               | -              | -              | -                | -                 |
| 댐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                | -                 |
| 어항및항만시설             | -                 | -               | -              | -              | -                | -                 |
| 어항및항만시설<br>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                | -                 |
| 기타사회기반시설            | 107,614,185,215   | -               | 116,946,900    | -              | -                | 107,731,132,115   |
| 기타사회기반시설<br>감가상각누계액 | (7,140,126,108)   | -               | (39,943,322)   | -              | -                | (7,180,069,430)   |
|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 16,080,645,230    | 28,304,729,895  | -              | -              | -                | 44,385,375,125    |
| VI.기타비유동자산          | 1,059,127,471     | -               | 5,111,112      | 705,533,950    | -                | 1,769,772,533     |
| 보증금                 | -                 | -               | -              | 324,000        | -                | 324,000           |
| 무형자산                | 1,045,579,197     | -               | 5,111,112      | 705,209,950    | -                | 1,755,900,259     |
| 기타비유동자산             | 13,548,274        | -               | -              | -              | -                | 13,548,274        |
| (자산총계)              | 1,876,759,702,574 | 105,117,107,280 | 36,001,051,644 | 51,413,921,390 | (28,972,360,800) | 2,040,319,422,088 |
| 부채                  | -                 | -               | -              | -              | -                | -                 |
| I. 유동부채             | 4,167,814,579     | 43,030,619      | -              | 42,972,690     | -                | 4,253,817,888     |
| 단기차입금               | -                 | -               | -              | -              | -                | -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1,250,000,000     | -               | -              | -              | -                | 1,250,000,000     |
| 기타유동부채              | 2,917,814,579     | 43,030,619      | -              | 42,972,690     | -                | 3,003,817,888     |
| II. 장기차입부채          | 20,288,000,000    | -               | -              | -              | -                | 20,288,000,000    |
| 장기차입금               | 20,288,000,000    | -               | -              | -              | -                | 20,288,000,000    |
| 지방채증권               | -                 | -               | -              | -              | -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 3,135,003,480     | 4,732,690       | -              | -              | -                | 3,139,736,170     |
| 퇴직급여충당부채            | 3,014,713,330     | 4,732,690       | -              | -              | -                | 3,019,446,020     |
| 기타비유동부채             | 120,290,150       | -               | -              | -              | -                | 120,290,150       |
| (부채총계)              | 27,590,818,059    | 47,763,309      | -              | 42,972,690     | -                | 27,681,554,058    |
| 순자산                 | -                 | -               | -              | -              | -                | -                 |
| I. 고정순자산            | 1,735,890,141,660 | 99,681,984,148  | 214,833,625    | 49,333,488,171 | -                | 1,885,120,447,604 |
| 고정순자산               | 1,735,890,141,660 | 99,681,984,148  | 214,833,625    | 49,333,488,171 | -                | 1,885,120,447,604 |
| II. 특정순자산           | -                 | -               | 35,786,218,019 | -              | -                | 35,786,218,019    |
| 특정순자산               | -                 | -               | 35,786,218,019 | -              | -                | 35,786,218,019    |
| III. 일반순자산          | 113,278,742,855   | 5,387,359,823   | -              | 2,037,460,529  | (28,972,360,800) | 91,731,202,407    |
| 일반순자산               | 113,278,742,855   | 5,387,359,823   | -              | 2,037,460,529  | (28,972,360,800) | 91,731,202,407    |
| (순자산총계)             | 1,849,168,884,515 | 105,069,343,971 | 36,001,051,644 | 51,370,948,700 | (28,972,360,800) | 2,012,637,868,030 |
| (부채와순자산총계)          | 1,876,759,702,574 | 105,117,107,280 | 36,001,051,644 | 51,413,921,390 | (28,972,360,800) | 2,040,319,422,088 |

## 재 정 운 영 보 고 서 (기 능 별 )

당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선군

(단위 : 원)

| 과 목         | 당해년도 ( 2011년 )  |                |               |               |                 |                 |
|-------------|-----------------|----------------|---------------|---------------|-----------------|-----------------|
|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br>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
| I. 비용       |                 |                |               |               |                 |                 |
| 일반공공행정      | 15,494,244,844  | -              | -             | -             | -               | 15,494,244,844  |
| 공공질서및안전     | 3,941,727,635   | -              | 229,825,544   | -             | (277,260,000)   | 3,894,293,179   |
| 교육          | 5,114,147,970   | -              | -             | -             | -               | 5,114,147,970   |
| 문화및관광       | 9,497,321,769   | -              | -             | -             | -               | 9,497,321,769   |
| 환경보호        | 11,586,607,171  | 371,339,659    | -             | 9,466,557,487 | (3,700,000,000) | 17,724,504,317  |
| 사회복지        | 31,784,730,850  | 625,582,583    | 113,913,000   | -             | (499,676,000)   | 32,024,550,433  |
| 보건          | 3,584,336,079   | -              | 22,014,350    | -             | -               | 3,606,350,429   |
| 농림해양수산      | 35,701,874,240  | -              | -             | -             | (1,000,000,000) | 34,701,874,240  |
| 산업·중소기업     | 490,604,764     | -              | -             | -             | -               | 490,604,764     |
| 수송및교통       | 5,865,153,259   | 106,103,544    | -             | -             | -               | 5,971,256,803   |
| 국토및지역개발     | 20,591,713,925  | 13,243,889,659 | -             | -             | (380,000,000)   | 33,455,603,584  |
| 과학기술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
| 지원및기타경비     | 50,322,835,389  | 2,626,238,313  | 10,873,199    | -             | -               | 52,959,946,901  |
| II. 비용총계    | 193,975,297,895 | 16,973,153,758 | 376,626,093   | 9,466,557,487 | (5,856,936,000) | 214,934,699,233 |
| III. 자체조달수익 | 50,822,304,089  | 3,953,252,058  | 729,803,084   | 6,648,061,209 | -               | 62,153,420,440  |
| 지방세수익       | 30,856,296,180  | -              | -             | -             | -               | 30,856,296,180  |
| 경상세외수익      | 17,317,049,032  | 3,087,602,738  | 726,923,084   | 6,648,054,579 | -               | 27,779,629,433  |
| 임시세외수익      | 2,648,958,877   | 865,649,320    | 2,880,000     | 6,630         | -               | 3,517,494,827   |
| IV. 정부간이전수익 | 213,388,137,407 | 22,791,705,519 | 107,200,000   | -             | -               | 236,287,042,926 |
| 지방교부세수익     | 113,840,396,000 | -              | -             | -             | -               | 113,840,396,000 |
| 조정교부금수익     | -               | -              | -             | -             | -               | -               |
| 재정보전금수익     | 4,669,872,000   | -              | -             | -             | -               | 4,669,872,000   |
| 국고보조금수익     | 56,730,007,705  | 22,775,447,458 | -             | -             | -               | 79,505,455,163  |
| 시도비보조금수익    | 38,147,861,702  | 16,258,061     | 107,200,000   | -             | -               | 38,271,319,763  |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 -               | -              | -             | -             | -               | -               |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 -               | -              | -             | -             | -               | -               |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 -               | -              | -             | -             | -               | -               |
| V. 기타수익     | 111,125,636     | 4,239,781,536  | 1,317,260,000 | 382,538,410   | (5,856,936,000) | 193,769,582     |
| 전입금수익       | -               | 4,239,676,000  | 1,317,260,000 | 382,538,410   | (5,856,936,000) | 82,538,410      |
| 기부금수익       | 109,900,000     | -              | -             | -             | -               | 109,900,000     |
| 외화환산이익      | -               | -              | -             | -             | -               | -               |
| 외환차익        | -               | -              | -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1,225,540       | 105,536        | -             | -             | -               | 1,331,076       |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               | -              | -             | -             | -               | -               |
| 자산감액손실환입    | -               | -              | -             | -             | -               | -               |
| 기타수익        | 96              | -              | -             | -             | -               | 96              |
| VI. 수익총계    | 264,321,567,132 | 30,984,739,113 | 2,154,263,084 | 7,030,599,619 | (5,856,936,000) | 298,634,232,948 |

정선군

(단위 : 원)

| 과 목         | 직전연도 ( 2010년 )  |                |               |               |                 |                 |
|-------------|-----------------|----------------|---------------|---------------|-----------------|-----------------|
|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br>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
| I. 비용       |                 |                |               |               |                 |                 |
| 일반공공행정      | 16,810,956,393  | -              | -             | -             | (3,000,000,000) | 13,810,956,393  |
| 공공질서및안전     | 3,932,388,081   | -              | 202,147,273   | -             | (251,917,000)   | 3,882,618,354   |
| 교육          | 4,226,072,100   | -              | -             | -             | -               | 4,226,072,100   |
| 문화및관광       | 10,394,377,417  | -              | -             | -             | -               | 10,394,377,417  |
| 환경보호        | 13,406,358,410  | 138,566,211    | -             | 8,782,494,296 | (4,440,000,000) | 17,887,418,917  |
| 사회복지        | 32,714,843,637  | 590,614,103    | 108,885,000   | -             | (495,634,000)   | 32,918,708,740  |
| 보건          | 3,592,997,665   | -              | 5,136,000     | -             | -               | 3,598,133,665   |
| 농림해양수산      | 34,207,465,295  | -              | -             | -             | (1,000,000,000) | 33,207,465,295  |
| 산업·중소기업     | 2,254,362,744   | -              | -             | -             | -               | 2,254,362,744   |
| 수송및교통       | 4,254,703,338   | 87,387,911     | -             | -             | -               | 4,342,091,249   |
| 국토및지역개발     | 14,397,170,550  | 11,601,178,601 | -             | -             | (650,000,000)   | 25,348,349,151  |
| 과학기술        | -               | -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 -               |
| 지원및기타경비     | 46,154,552,572  | 2,568,888,863  | 10,026,296    | -             | -               | 48,733,467,731  |
| II. 비용총계    | 186,346,248,202 | 14,986,635,689 | 326,194,569   | 8,782,494,296 | (9,837,551,000) | 200,604,021,756 |
| III. 자체조달수익 | 52,710,663,128  | 1,075,192,488  | 621,984,784   | 6,190,040,783 | -               | 60,597,881,183  |
| 지방세수익       | 32,349,352,620  | -              | -             | -             | -               | 32,349,352,620  |
| 경상세외수익      | 16,545,995,865  | 686,754,258    | 603,202,862   | 6,189,783,793 | -               | 24,025,736,778  |
| 임시세외수익      | 3,815,314,643   | 388,438,230    | 18,781,922    | 256,990       | -               | 4,222,791,785   |
| IV. 정부간이전수익 | 251,302,888,297 | 18,105,356,551 | -             | -             | -               | 269,408,244,848 |
| 지방교부세수익     | 110,343,195,000 | -              | -             | -             | -               | 110,343,195,000 |
| 조정교부금수익     | -               | -              | -             | -             | -               | -               |
| 재정보전금수익     | 3,229,572,000   | -              | -             | -             | -               | 3,229,572,000   |
| 국고보조금수익     | 118,459,036,902 | 18,090,512,008 | -             | -             | -               | 136,549,548,910 |
| 시도비보조금수익    | 19,271,084,395  | 14,844,543     | -             | -             | -               | 19,285,928,938  |
|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 -               | -              | -             | -             | -               | -               |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 -               | -              | -             | -             | -               | -               |
| 기타정부간이전수익   | -               | -              | -             | -             | -               | -               |
| V. 기타수익     | 300,314,899     | 5,162,585,891  | 4,292,017,000 | 552,832,050   | (9,837,551,000) | 470,198,840     |
| 전입금수익       | -               | 5,045,634,000  | 4,291,917,000 | 552,832,050   | (9,837,551,000) | 52,832,050      |
| 기부금수익       | 300,000,000     | -              | -             | -             | -               | 300,000,000     |
| 외화환산이익      | -               | -              | -             | -             | -               | -               |
| 외환차익        | -               | -              | -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     | 314,899         | 1,982,661      | 100,000       | -             | -               | 2,397,560       |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               | -              | -             | -             | -               | -               |
| 자산감액손실환입    | -               | -              | -             | -             | -               | -               |
| 기타수익        | -               | 114,969,230    | -             | -             | -               | 114,969,230     |
| VI. 수익총계    | 304,313,866,324 | 24,343,134,930 | 4,914,001,784 | 6,742,872,833 | (9,837,551,000) | 330,476,324,871 |

## 순자산변동보고서

당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선군

(단위 : 원)

| 과 목                       | 당해년도 ( 2011년 )    |                 |                |                 |                  |                   |
|---------------------------|-------------------|-----------------|----------------|-----------------|------------------|-------------------|
|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br>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
| I. 기초순자산                  | 1,849,168,884,515 | 105,069,343,971 | 36,001,051,644 | 51,370,948,700  | (28,972,360,800) | 2,012,637,868,030 |
| II. 운영차액                  | 70,346,269,237    | 14,011,585,355  | 1,777,636,991  | (2,435,957,868) | -                | 83,699,533,715    |
| III. 순자산의 증가              | 1,875,738,040     | 148,403,891     | 16,330,310     | 750,680,330     | (300,000,000)    | 2,491,152,571     |
|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 -               | -                | -                 |
| 회계기준변경으로<br>생긴 누적이익       | -                 | -               | -              | -               | -                | -                 |
| 재산이관 · 관리전환<br>으로 생긴자산증가  | 1,500,000         | -               | -              | -               | -                | 1,500,000         |
| 양여 · 기부로생긴<br>자산증가        | -                 | -               | -              | -               | -                | -                 |
| 기타순자산의증가                  | 1,874,238,040     | 148,403,891     | 16,330,310     | 750,680,330     | (300,000,000)    | 2,489,652,571     |
| IV. 순자산의 감소               | 5,162,505,929     | 20,510,277      | -              | -               | -                | 5,183,016,206     |
|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                | -                 |
| 회계기준변경으로<br>생긴 누적손실       | -                 | -               | -              | -               | -                | -                 |
| 재산이관 · 관리전환<br>으로 생긴자산감소  | -                 | -               | -              | -               | -                | -                 |
| 양여 · 기부로생긴<br>자산감소        | -                 | -               | -              | -               | -                | -                 |
| 기타순자산의감소                  | 5,162,505,929     | 20,510,277      | -              | -               | -                | 5,183,016,206     |
| V. 기말순자산<br>(I+II+III-IV) | 1,916,228,385,863 | 119,208,822,940 | 37,795,018,945 | 49,685,671,162  | (29,272,360,800) | 2,093,645,538,110 |

정선군

(단위 : 원)

| 과 목                    | 직전연도 ( 2010년 )    |                 |                |                 |                  |                   |
|------------------------|-------------------|-----------------|----------------|-----------------|------------------|-------------------|
|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br>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
| I. 기초순자산               | 1,733,917,733,625 | 93,741,978,483  | 31,284,142,291 | 45,668,178,250  | (28,172,360,800) | 1,876,439,671,849 |
| II. 운영차액               | 117,967,618,122   | 9,356,499,241   | 4,587,807,215  | (2,039,621,463) | -                | 129,872,303,115   |
| III. 순자산의 증가           | 47,775,969,600    | 2,524,960,669   | 129,102,138    | 7,742,391,913   | (800,000,000)    | 57,372,424,320    |
|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 -               | -                | -                 |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br>누적이익     | -                 | -               | -              | -               | -                | -                 |
| 재산이관·관리전환<br>으로 생긴자산증가 | 3,253,800         | 218,309,240     | -              | -               | -                | 221,563,040       |
| 양여·기부로생긴<br>자산증가       | -                 | -               | -              | -               | -                | -                 |
| 기타순자산의증가               | 47,772,715,800    | 2,306,651,429   | 129,102,138    | 7,742,391,913   | (800,000,000)    | 57,150,861,280    |
| IV. 순자산의 감소            | 50,492,436,832    | 554,094,422     | -              | -               | -                | 51,046,531,254    |
|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                | -                 |
|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br>누적손실     | -                 | -               | -              | -               | -                | -                 |
| 재산이관·관리전환<br>으로 생긴자산감소 | 2,133,064,240     | -               | -              | -               | -                | 2,133,064,240     |
| 양여·기부로생긴<br>자산감소       | -                 | -               | -              | -               | -                | -                 |
| 기타순자산의감소               | 48,359,372,592    | 554,094,422     | -              | -               | -                | 48,913,467,014    |
| V. 기말순자산(I+II+III-IV)  | 1,849,168,884,515 | 105,069,343,971 | 36,001,051,644 | 51,370,948,700  | (28,972,360,800) | 2,012,637,868,030 |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2-534호

## 정선 신동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 부지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조성 사업부지내 주요시설에 대한 CCTV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및 시설물유지관리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 부지내 CCTV 설치 사업
2. 사업목적 : 안경다리 탄광마을 유리카페 등 주변 시설물의 파손방지를 위한 방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설치장소 및 대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25번지 유리카페 주변[1대]
4. 행정예고 기간 : 2012. 07. 10 ~ 07. 31(21일간)
5. 의견제출 기간 : 2010. 07. 10 ~ 07. 31(21일간)
6.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관광진흥담당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우 편 : (우)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봉양리267)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전 화 : 033)560-2370 / 팩 스 : 033)560-2593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

|                                                                                                                                                                                                                                                               |                                   |                |  |  |      |  |
|---------------------------------------------------------------------------------------------------------------------------------------------------------------------------------------------------------------------------------------------------------------|-----------------------------------|----------------|--|--|------|--|
| 사 업 명                                                                                                                                                                                                                                                         | 정선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조성부지내 방법 CCTV 설치사업 |                |  |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br>(개인/단체)                    |                |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행정예고 내용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정선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부지내 방법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서명 또는 인)</p> |                                   |                |  |  |      |  |
| 정선군수 귀하                                                                                                                                                                                                                                                       |                                   |                |  |  |      |  |

정선군 공고 제2012- 543호

### 2012.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지원계획 공고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농업·농촌 발전안정기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정 선 군 수

1. 지원규모 : 9,153백만원(2012년 하반기 추가운용금액 : 2,873백만원)
2. 지원대상 : 군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단체 등
3. 지원대상 사업
  - 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 나. 지역특화육성 사업
  - 다. 지역명품 사업
  - 라. 농축산물 가격안정(생산운영) 자금지원사업
  -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5천만원, 단체 1억 이내
5. 융 자 조 건 :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운영자금1년거치2년균분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 가. 접수기간 : 2012. 7. 16 ~ 2012. 8. 15.
  - 나. 접 수 처 : 농업축산과,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2호 서식), 신용조사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농업축산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정선군 공고 제2012-573호

## 대부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위반 대부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1항 제1호에 의거 영업정지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공시송달 대상 대부업체에서는 의견이 있을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정당한 의견이 없을시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 08. 01.

정 선 군 수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업체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
| 강원정선 2011-대부36               | 은하전당사대부  | 주용식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7   |
| 강원정선 2011-대부2                | 우진전당사대부  | 권순분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135 |
| 강원정선 2010-대부41               | 은하대부전당사  | 정수영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5-7   |
| 강원정선 2010-대부12<br>2010-대부중개3 | 굿모닝대부전당사 | 김성경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95  |

3.공고기간 : 2012. 08. 01 ~ 2012. 08. 16 (16일간)

## 4.공시송달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대부업 영업 전부정지 6월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정이자율 초과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항 제1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의견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560-2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 의 건 제 출 서

|                                                                                                                                                                                                                                                                                                                                    |                                                                                                                                             |  |
|------------------------------------------------------------------------------------------------------------------------------------------------------------------------------------------------------------------------------------------------------------------------------------------------------------------------------------|---------------------------------------------------------------------------------------------------------------------------------------------|--|
| 1. 예정된 처분의<br>제목                                                                                                                                                                                                                                                                                                                   |                                                                                                                                             |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 소                                                                                                                                         |  |
| 3. 의 건                                                                                                                                                                                                                                                                                                                             |                                                                                                                                             |  |
| 4. 기 타                                                                                                                                                                                                                                                                                                                             |                                                                                                                                             |  |
| <p>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 제출인 주소 :</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                      )</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                                      (서명 또는 인)</p> <p>정선군수 귀하</p> |                                                                                                                                             |  |
| 비<br>고                                                                                                                                                                                                                                                                                                                             |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대하여 붙임한 의견제출서에 의하여 서면·정보통신망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지역경제과 ☎033-560-2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선군 공고 제2012-579 호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제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2012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제공표 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정 선 군 수

## □ 주민소환투표 주민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 시군명 | 19세이상 주민수(A) |        |           | 선거권이 없는 자(B) |     |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A-B) |        |       |
|-----|--------------|--------|-----------|--------------|-----|-------|---------------------|--------|-------|
|     | 계            | 내국인    | 3년경과등록외국인 | 계            | 내국인 | 등록외국인 | 계                   | 내국인    | 등록외국인 |
| 정선군 | 33,833       | 33,808 | 25        | 141          | 141 | 0     | 33,692              | 33,667 | 25    |

※ 2011. 12. 31현재 기준

##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자치단체장(군수) : 5,054명 이상

(단위 : 명)

| 선거구명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 서명인수         | 비 고    |
|-------------|---------------|--------------|--------|
| <b>정선군수</b> | <b>33,692</b> | <b>5,054</b> | 총 서명인수 |
| 정 선 읍       | 9,243         | 337          |        |
| 고 한 읍       | 4,214         | 337          |        |
| 사 북 읍       | 4,519         | 337          |        |
| 신 동 읍       | 3,666         | 337          |        |
| 화 암 면       | 1,475         | 221          |        |
| 남 면         | 2,919         | 337          |        |
| 여 량 면       | 1,977         | 297          |        |
| 북 평 면       | 2,361         | 337          |        |
| 임 계 면       | 3,318         | 337          |        |

※ 서명인수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3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읍면별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지방의회의원 : 가선거구 3,675명 이상, 나선거구 3,064명 이상

(단위 : 명)

| 읍 면 별       | 주민소환투표<br>청구권자 총수 | 서명인수         | 비 고    |
|-------------|-------------------|--------------|--------|
| <b>가선거구</b> | <b>18,374</b>     | <b>3,675</b> | 총 서명인수 |
| 정 선 읍       | 9,243             | 184          |        |
| 화 암 면       | 1,475             | 184          |        |
| 여 량 면       | 1,977             | 184          |        |
| 북 평 면       | 2,361             | 184          |        |
| 임 계 면       | 3,318             | 184          |        |
| <b>나선거구</b> | <b>15,318</b>     | <b>3,064</b> | 총 서명인수 |
| 고 한 읍       | 4,214             | 153          |        |
| 사 북 읍       | 4,519             | 153          |        |
| 신 동 읍       | 3,666             | 153          |        |
| 남 면         | 2,919             | 153          |        |

※ 서명인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 2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읍면별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재 공표 사유 : 읍면별 최소 서명인수 산정 착오에 따른 정정



정선군공고 제2012-593호

## 2012.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2012년 8월 3일

## 정 선 군 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자 하오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기간내에 열람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시기준 : 2012년 6월 1일 기준

2.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2년 8월 3일 ~ 8월 23일(20일)
- 장 소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대 상 : 2012.1.1~5.31사이 토지의 분할·합병과 주택 신축등이 발생한 주택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7-14번지의 134호주택
- 내 용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 의견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 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함.

4. 개별주택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560-2149)연락 바랍니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2-11호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에정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정선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 3. 개정 주요내용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사업중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리·운영 규정 삭제(안 제17조제1항6의5)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의회 의장(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의회  
전문위원실 (우편번호 233-804)
- FAX제출 : 033-560-2794
- 문의전화 : 033-560-2180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번호 | 제 102 호 |
|------|---------|

발의연월일 : 2012. 7. 30

발 의 자 : 박승세, 장덕수의원

1. 제안이유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으로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규정된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운영”사업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사업 범위 조정)

2. 주요골자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사업 중 병방치 스카이워크 관리·운영 규정 삭제  
(안 제17조제1항제6호의5)

3. 참고사항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계법령 발췌 1부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의 5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사업) ① (생략)<br>1.~6의4. (생략)<br><u>6의5.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리·운영</u><br>6의6.~8. (생략) | 제17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br>1.~6의4. (현행과 같음)<br><u>&lt;삭 제&gt;</u><br>6의6.~8. (현행과 같음) |

## 관 계 법 령 발 취

##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05.30.>

**제2조의3(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5.30.>

**제3조(설치)**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기획감사실장, 녹색환경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5.30>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군립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 하는 자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 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그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 및 제4조제4항제1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과 제4조제4항제2호·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군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어린이”는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③ “청소년”은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④ “성인”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05.30>

**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단체 20인 이상은 10% 감면한다.

②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는 50%감면한다.(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

③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30% 감면한다.

<본조신설 2012.05.30>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4. 공원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1.03.02.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5. 30. 조례 제2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 [별표 1]

##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

| 명 칭      | 위 치                       | 시설의 종류                                                                                                                                                                         |
|----------|---------------------------|--------------------------------------------------------------------------------------------------------------------------------------------------------------------------------|
| 병방산 군립공원 | 정선군 정선읍 북일리<br>광하리<br>굴암리 | 1. 짚-와이어 시설<br>○ 짚-와이어 탑승 및 하강장<br>○ 스카이라운지<br>○ 광장 및 주차장<br>2. 스카이워크 시설<br>○ 전망시설<br>○ 매표 및 관리소<br>○ 주차장<br>○ 화장실<br>3. 숙박시설<br>4. 교통운송시설(곤돌라)<br>5. 생태관찰 및 탐방로<br>6. 기타 편의시설 |

## [별표 2]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 1. 스카이워크 전망대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비고         |
|-----|--------|--------|--------|------------|
| 입장료 | 5,000원 | 3,000원 | 2,000원 | (셔틀버스비 포함) |

## 2. 짚와이어 시설

| 구분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비고           |
|-------|---------|-----|-----|--------------|
| 시설사용료 | 40,000원 |     |     | 스카이워크 전망대 포함 |